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10. 19.(수)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오현 (044-202-8830)
		담당자	서기관 고병곤 (044-202-8832)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건강손상자녀의 산재보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10.19.(수) 한겨레, ‘태아 산재법’ 시행 앞두고 문턱 높은 고용부

-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임신 노동자의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면 이를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의 시행령에 화학적 유해인자를 좁게 규정해 산재 인정 문턱을 높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최소한의 화학물질만 유해인자로 인정하려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무리하게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산재 문턱을 높이기보다는 많은 피해자가 산재 신청을 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 설명 내용

□ ‘22.1.11.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에서 대통령령으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 '22.10.17. 입법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부인과, 직업환경의학과, 산업위생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 연구결과*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및 한국산업보건학회 전문가의 검토를 반영한 것으로
- *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생식독성물질) 및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그간 국내외에서 선천성 기형과 의학적 연관성이 밝혀진 연구결과(의학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를 정하였음
- * (의학적 근거) 선천성 기형에 대한 역학연구의 수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간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는 경우 또는 인간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인간대상 관찰 역학 연구가 있고, 선천성 기형과의 연관성이 동물실험 상에서 확인된 것
- 또한, 포괄규정*을 두어 산업구조의 변화, 향후 의학 연구결과로 인해 건강손상자녀를 일으키는 유해인자가 추가적으로 밝혀질 경우 이를 포함 하도록 하였음
- * 시행령에서 정한 유해요인이 아니더라도 임신중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급이나 노출된 유해인자가 건강손상자녀와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
- 입법예고 기간('22.10.17.~11.28.)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건강손상자녀의 산재보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